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83

발의연월일: 2021. 3. 10.

발 의 자:임오경·최혜영·박영순

김승원 · 황운하 · 홍성국

강득구 · 정청래 · 최기상

한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수어 관련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, 관련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. 이에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및 농정체성 확립, 농문화 육성 정책 수립·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, 사법·행정 등의 절차, 공공시설 이용, 공영방송,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함. 이에 따라 각종 공공행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발표(브리핑), 기자회견 등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음.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떤 경우 현장

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(안 제4조제3항 신설)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있어서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,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농인등이 알수 있도록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①・②(생략)	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
	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
	•시행에 있어서 농인등의 의
	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
	<u> 여야 한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6조(수어통역) ①・② (생	제16조(수어통역) ①·② (현행과
략)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
	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
	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
	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
	하여야 하며, 정보통신망 등을
	이용하여 농인등이 알 수 있도
	록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
	야 한다
<u>③</u> ~ <u>⑤</u> (생 략)	<u>④</u> ~ <u>⑥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5
	항까지와 같음)